

산업별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예지** · 정지선***

〈요 약〉

본 논문은 해외 사례를 통해 기업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에 본 논문은 OECD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를 조사한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해운강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운업에 대한 톤세제도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조사결과, 법인세율과 관련하여 중국과 베트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친환경산업, 영국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지식재산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표준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건설업의 조세회피유인 억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를 종결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비용산정이 어려운 항공업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일정률을 과세소득으로 보는 인정이윤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특례제도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의 법인세 과세체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단기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산업과 친환경산업 등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제도의 적용대상, 공제율 등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산업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우대세율이 대체로 표준법인세율의 2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력기술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방식을 세액공제율에서 감면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우대세율제도는 대체로 단일법인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한 이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업

* 본 논문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도와주신 익명의 두 심사위원님과 세무회계저널 편집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yeji0320@uos.ac.kr, 주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stopline@uos.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24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24일

I. 서 론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에 대해 기업은 물론 국가 간 경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국가전략기술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을 갖춘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정부는 2017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세액공제의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¹⁾

우리나라의 4단계 초과법인세율체계 하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감면제도는 기업의 누적적 법인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결손이 발생하였거나 산출세액이 세액공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 적용가능한 세액공제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운강국들이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와 달리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 톤수에 기반한 추정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톤세(tonnage tax system)의 특징에 주목한다. 톤세는 세액공제·감면방식이 아닌 법인세 산출세액의 요인인 과세표준에 해운업의 특성을 반영한 법인세제이다(손원의 2004). 이에 본 논문은 산업의 혁신과 다양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특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해외 국가들의 법인세 특례제도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고려하여 연구범위는 영리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특례제도를 살펴본다. 다만, 톤세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해운강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정세를 고려하여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조사결과, 주요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특정 산업에 대한 법인세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소프트웨어산업과 친환경산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소득에 대해 표준 법인세율 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1) 예를 들어, 기업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 투자계획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령안이 2022년 11월,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357), 2022.11.22.), 문화적 권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4월, 발의되었다(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115), 2023.4.4.).

주요 유럽국가들은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특허박스제도(Patent box)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소프트웨어와 친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우대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는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임대소득과 건설업의 조세회피유인 억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함으로써 법인세 과세를 종결한다. 또한 비용산정이 어려운 항공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소득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간주하는 인정이윤 과세제도(Deemed profit margins)를 시행하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는 순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표준과 다른 매출액을 과세소득 기준으로 보는 법인세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특정 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특례제도는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체계에 다음의 시사점을 준다. 먼저, 소프트웨어산업과 친환경산업에 대한 우대세율수준은 대체로 해당 국가 표준법인세율의 2분의 1 수준인데, 이는 법인세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해당 특례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단일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특정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세제지원제도는 대체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감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 과세체계의 차이를 감안할 때, 주요 국가의 특정 산업에 대한 우대세율제도를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단기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산업과 친환경산업 등에 적용되는 현행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공제율, 적용 기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액공제방식은 경쟁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우대세율에 미치지 못한다. 특정 산업에 대한 우대세율은 해당 국가 표준법인세율의 절반인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세액감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정 산업에 대한 우대세율은 단일법인세율체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으므로, 우대세율 적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이 단계적으로 축소된 이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²⁾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와 같은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따른 과세방법은 세무행정절차 측면에서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비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 부당한 세금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점, 영리법인들의 발달된 회계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2) OECD 38개 국가 중 과세표준 구간이 1개인 국가가 24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2개 구간은 11국가, 3개 구간은 룩셈부르크, 4개 구간은 우리나라, 5개 구간은 코스타리카인 것으로 확인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3).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정 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범위를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해외 사례가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체계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며,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산업과 법인세 과세체계

1. 한국표준산업분류³⁾

산업 분류는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사성이 높은 것들끼리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즉 기업)의 집합을 의미하며, 산업활동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나타낸다.

산업분류는 국제연합(UN)에 의한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와 이를 준용하여 각 국가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산업을 분류한 개별 국가의 산업분류가 있다(김완중 2019).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에 따른다. 이는 1963년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최초로 제정한 이후, 1964년 제조업 이외 산업분류를 추가하였고 이후 2024년까지 11차례 개정하여 운행 중이다.

KSIC 분류구조는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 중분류(2자리 숫자 사용),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 총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권고된 ISIC 기본체계 하에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국제분류의 각 단계 항목을 분할, 통합 또는 재그룹화하여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를 설정하였다. <표 1>은 KSIC의 제10차와 제11차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항목 수를 보여준다.

생산단위(기업)가 어떤 산업에 포함되는지는 그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된다.⁴⁾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과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된다. 활동단위가 복합적인 경우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3) ‘통계청, 2024,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4)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소·세·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에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산업분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통계작성 이외에 산업분류는 산업단지 입주, 세금 및 공공요금 부과,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등 관련 다수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는데 그 사례가 2004년 48개에서 2014년 89개로 증가하고 있다(김완중 2019 ; 통계청 2022).

〈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구·신분류 단계별 분류 항목 수 비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0차	11차	10차	11차	10차	11차	10차	11차
A. 농업, 임업 및 어업	3	3	8	8	21	21	34	33
B. 광업	4	4	7	7	10	10	11	11
C. 제조업	25	25	85	85	183	182	477	48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1	3	3	5	5	9	10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4	6	6	14	14	19	19
F. 건설업	2	2	8	8	15	16	45	46
G. 도매 및 소매업	3	3	20	20	61	62	184	186
H. 운수 및 창고업	4	4	11	11	19	19	48	47
I. 숙박 및 음식점업	2	2	4	4	9	11	29	30
J. 정보통신업	6	6	11	12	24	26	42	45
K. 금융 및 보험업	3	3	8	8	15	14	32	29
L. 부동산업	1	1	2	2	4	4	11	12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	4	14	14	20	20	51	5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3	11	11	22	22	32	32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1	5	6	8	10	25	28
P. 교육서비스	1	1	7	7	17	17	33	33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2	6	6	9	9	25	2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2	4	4	17	17	43	43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3	8	8	18	18	41	41
T.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2	2	3	3	3	3	3	3
U. 국제 및 외국기관	1	1	1	1	1	1	2	2
합계	77	77	232	234	495	501	1,196	1,205

* 자료 : 통계청, 2024, 「한국표준산업분류」, p.20.

2.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체계

가.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법인세 과세소득을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순자산 증가로 보는 순자산증가설 또는 포괄적 소득개념에 입각하여 구성하고 있다(김완석·황남석 2023). 이에 따라, 법인세법은 법인세 과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⁵⁾ 여기서 익금과 손금은 법에서 열거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정의 규정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⁶⁾

법인세액은 법인세 과세소득을 시작으로, <그림 1>과 같이 산정된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된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초과누진세율체제로, 2024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9%, 19%, 21%, 24% 4단계 구간으로 규정되어 있다.⁷⁾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결정세액이 산정된다.

<그림 1>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	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	법인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차감납부할세액

요약하면,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법인세부담은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따라 감소될 수 있으나, 이는 모든 기업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5)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6)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제19조 제1항

7)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결손인 경우 세액공제·감면을 당해연도에 적용받을 수 없다. 이를 고려할 때, 초과누진세를 구조에서 법인세 과세표준과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율이 기업의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법인세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와 다른 과세특례제도는 크게 해운업에 적용되는 톤세와 특정 업종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으로 구분된다.

(1)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톤세

톤세는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경영실적이 아닌 선박의 톤수 또는 이를 기반으로 설정한 추정이익(Notional profit)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법인세 과세체계이다. 이는 해운기업에게 최적의 경영환경과 비용 요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안되었으며, 1996년 네덜란드를 필두로 도입되어 노르웨이, 독일, 영국, 스페인, 핀란드 등 유럽 주요 해운강국이 도입하였다.⁸⁾ 톤세 도입 이후 해당 국가들의 해운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5년에, 해운업의 국제적 정세를 고려하여 경쟁해운국과 대등한 조세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해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톤세를 도입하였다.⁹⁾

우리나라의 톤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¹⁰⁾에 따라 내국법인 중 일정 요건¹¹⁾을 충족하는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¹²⁾ 일반적으로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과 달리, 톤세의 해운소득은 실제소득이 아닌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간주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한다. 즉 개별선박표준이익은 ‘개별선박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로 산정된다. 한편, 비해운소득은 일반 기업과 같이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약하면, 톤세는 세전이익이 아닌 선박톤수, 운항일수 등에 근거하여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

8) 노르웨이는 1996년, 독일은 1999년, 영국은 2000년, 스페인과 핀란드는 2002년에 도입하였다.

9) ‘손원익, 2004, 『톤세제도 도입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

11) 해운법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수산물운송사업 제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1항).

1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시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2항).

세를 과세하여 외화환산손익에 따른 법인세 변동이 완화되므로 해운시황 및 환율변동에 따라 경영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이다.

(2)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액공제·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중 통합투자·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각각 전자는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 후자는 설비투자 보다 위험이 수반되는 기술개발활동의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다. 두 제도는 적용 요건과 공제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세액공제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공제율이 <표 2>와 같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에 따라 차등적이다. 동일 기업 규모 내 기본공제율을 비교하면, 가장 높은 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이며, 그 다음은 신성장·원천기술이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항목이며 구체적인 시설 또는 기술의 범위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별표 7의2에 따른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13개 공통항목이 존재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차세대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방위산업 항목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각각의 세부분야와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별표 7에 따른다.

<표 2>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기본공제율 비교

구분	국가전략기술사업	신성장사업	일반
통합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 25% 중견기업, 이 외의 기업 : 15%	중소기업 : 12% [18%] ¹⁾ 중견기업 : 6% [10%] ¹⁾ 이 외의 기업 : 3% [6%] ¹⁾	중소기업 : 10% [12%] ¹⁾ 중견기업 : 5% [7%] ¹⁾ 이 외의 기업 : 1% [3%] ¹⁾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규모별 공제율(중소기업 : 40%, 이 외의 기업 : 30%) +Min(국가전략기술연구 개발비/수입금액×3, 10%)	기업규모별 공제율(중소기업 :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25%, 이 외의 기업 : 20%)+Min(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수입금액×3, 10%(코스닥중견기업 15%))	중소기업 : 10·15·25% ²⁾ 중견기업 : 8% 이 외의 기업 : 2% ³⁾

1) [] 공제율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됨

2) 중소기업(유예기간 중 기업 포함) : 25%, 중소기업 졸업기업(유예기간 경과 기업) : 유예기간 경과 3년 까지 15%, 유예기간 경과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까지 10%

3) Min(2%, 연구인력개발비/수입금액×50%)

이 외에 정부는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자 영상콘텐츠산업에 특화된 세제지원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2016년 12월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상콘텐츠 실질 제작 내국인 영상제작자이다.¹³⁾ 적용대상 영상콘텐츠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다.¹⁴⁾ 공제대상 제작비용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건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따른 제작비용이다.¹⁵⁾ 공제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한데,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이며,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의 경우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추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¹⁶⁾

3. 연구 목적 및 범위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체계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순이익 개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과세체계 하에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규정은 해운업의 톤세이다. 해운업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원천기술, 영상콘텐츠 산업 등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액공제를 통한 세부담 완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산업의 혁신과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은 주요 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해운업의 특성을 반영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도인 톤세의 취지에 주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산업의 특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특례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의 연구범위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체계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은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법인 중 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법인 설립 목적에 있어서 영리 이외에 공익, 서민 경제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익법인과 조합법인¹⁷⁾은 본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3)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4)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제1항 제1호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6항

16)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4항

17)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조합법인의 법인세는 세무조정의 범위를 축소하고 일반법인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둘째, 연구대상인 특정 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범위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특례로 정의한다.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감면은 적용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점, 법인세율이 초과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세액공제·감면 보다 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세율에 대한 특례 규정이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크다는 점, 결손 중인 경우 세액공제·감면액의 공제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에서 제외한다.

셋째, 순이익이 아닌 선박톤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해운업에 대한 통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통세의 국제적 정세를 고려하여 본 논문은 해운업 이외의 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를 검토한다.

넷째,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고려할 때, 오일산업에 대한 석유세(Petroleum tax), 횡재세(Windfall tax) 등과 같은 추가적인 법인세 과세는 조사범위에서 제외한다.

III. 주요 해외 국가의 특정 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특례 규정

본 논문은 2022년 기준, OECD와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PWC의 Worldwide Tax Summaries, Deloitte의 Tax guides and highlights에 기반하여 특정 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특례규정을 조사한다.¹⁸⁾

1. 소프트웨어산업¹⁹⁾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유럽 국가(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특허박스제도, 중국과 베트남은 관련 산업에 대해 법인세 우대세율 세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가. 특허박스제도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²⁰⁾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지식재산관련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주요 국가들은 자

18) 'PWC, Worldwide Tax Summaries, <<https://taxsummaries.pwc.com/>> 및 Deloitte, Tax guides and Highlights, <<https://dits.deloitte.com/#TaxGuides>>'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9)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국가의 용어의 범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하이테크기술, 지식재산 등 관련 산업을 포괄한 개념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조사한다.

20) '한국은행, 2014, 「특허박스(Patent box)제도의 현황 및 국내 도입 방향」'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국 내 기업의 혁신 기반기술의 이전 및 사업 활성화, 지식재산을 소유한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치, 특허 및 기술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총수익 중 특허권 등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하에서는 현재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주요 선진국들(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사례를 살펴본다.²¹⁾

프랑스의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는 회계상 세전이익에 특정한 세무조정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표준 법인세율 25%를 적용한다.²²⁾ 그러나 적격 지식재산 소득이나 그로부터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 보다 낮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²³⁾

영국의 법인세율은 2022년 4월 1일 회계연도의 경우 19%, 2023년 4월 1일 회계연도부터는 25%로 인상되었으며, 다만 이익이 GBP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은 19%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법인세 체계 하에서 영국은 특허로부터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10% 세율을 적용한다. 영국의 특허박스제도는 2009년에 도입이 추진되었고 2013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시행 이후 5년 간 특허박스제도가 적용되는 수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즉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특허활용 수익의 60%를 인정하였고 매년 10%씩 인정비율을 높여 2017년부터 특허활용 수익의 100%에 대해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2007년에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허박스제도가 적용되는 적격 지식재산소득에 대해 당시 일반 법인세율인 25.5%보다 낮은 10% 세율을 적용하였다. 2010년, 특허박스제도 적용 대상 지식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혁신박스(innovation box)라 불리워지게 되었고 세율은 최초 10%에서 5%로 인하하였다가 2021년 1월 1일부터 9%로 다시 인상되었다. 네덜란드의 특허박스제도는 과세이익의 30% 이상이 특허에서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특허가 부여되지 않은 지적재산권 개발을 위해 특정 적격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한 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다.²⁴⁾

나. 법인세 우대세율 적용 : 중국, 베트남

중국의 법인세율은 25%이며,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저이윤기업은 2021년부터 2022년 12월 31일

21) 첫 도입국가인 아일랜드는 1973년 최초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재정위기로 인한 구제금융 이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2011년에 특허박스제도를 폐지하였다.

22) 2022년 1월 1일부터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프랑스의 모든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입에서 1,900만 유로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0.16%의 세율을 적용한 사회기여금(social contribution tax)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23) 2019년 1월부터 특허박스제도 세율이 10%로 변경되었다.

24) 현행 네덜란드의 특허박스제도는 Action 5에 대한 OECD 보고서에 설명된 수정된 넥서스 접근 방식과 일치하며 EU 행동 강령 그룹에도 해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까지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인 경우 2.5%, 100만 위안 초과 3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100만 위안 초과금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은 적격 하이테크기술산업(High and New Technology Enterprises, HNTE)과 진보된 기술과 서비스업(Advanced Technology Service Enterprises, ATSE), 적격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기업 산업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우대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국 내 해당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 3>의 요건을 충족한 HNTE와 ATSE 기업²⁵⁾은 15%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²⁶⁾ 적격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기업은 처음 이익이 창출된 이후 5년 간은 법인세를 면제 받고 이후에는 10% 우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표 3> 중국 HNTE 및 ATSE 적격 기업 요건

구분	적격 기업 요건
HNTE	- 자체 지적재산권이 중국(대만, 마카오, 홍콩은 제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할 것 - 독자적인 연구개발, 이전, 기부, 인수합병 등을 통해 핵심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핵심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IP) 권리를 보유하여야 할 것 - 기업의 핵심제품의 핵심기술은 국가가 강력하게 지원하는 첨단기술 영역에 명시된 영역의 범위에 속하며, 8개 대규모 기술 영역에서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200개 이상의 범주를 포함할 것 -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기술 인력은 올해 총 직원 수의 10% 이상으로 구성될 것 - 최근 회계연도¹⁾에 연구개발비 지출은 같은 기간 기업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차지할 것 • 최근 연매출액이 5천만 위안 미만인 경우 : 5% 이상 • 최근 연간 매출이 5천만 위안 이상 2억 위안 미만인 경우 : 4% 이상 • 최근 연간 매출이 2억 위안 이상인 경우 : 3% 이상
ATSE	-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할 것(대만, 마카오, 홍콩 제외). - 연구개발 원칙이 강한 사업을 채택하는 인정된 첨단기술 서비스 사업 범위에 포함된 핵심첨단기술 서비스 사업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해야 할 것 - 기업 직원의 50% 이상이 대학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할 것 - 해당 범위의 고급기술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수익이 총 연간 수익의 50% 이상이어야 할 것 - 역외 서비스 아웃소싱에서 발생한 수익²⁾은 전년도에 발생한 수익의 35% 이상이어야 할 것

1) 신설된 회계연도의 실제 운영 기간임.

25) ATSE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6년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우대조치로부터 시작되어 1년 후인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26) 'Acadia, China ATSE Tax Incentives for Advanced Technology Service Enterprise, <<https://acadiaadvisory.com/china-atses-tax-incentives-for-advanced-technology-service-enterprises/>>'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2) 해당 기업이 해외 법인에게 나열된 KPO, ITO, BPO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해외 법인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의미함.

베트남의 법인세 과세소득은 총수익²⁷⁾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비용을 차감하고 기타소득을 가산한 금액으로, 표준법인세율 20%이다. 베트남은 일반적인 과세체계에 대한 특례 성격으로, 법에서 정해진 투자촉진산업 및 지역 또는 대규모 조건의 투자사업, 확장투자 및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세제혜택(이하, 투자촉진 세제혜택)을 부여한다.²⁸⁾ 이 중 소프트웨어 관련 특정 산업에 대해 최초 수익이 창출된 이후 15년간 10%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우대세율 적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표준법인세율 20%를 적용받는다.²⁹⁾

10%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산업은 하이테크, 하이테크법에 의한 하이테크의 지원산업 제품, 소프트웨어 제품·제조이다. 하이테크에 속하는 활동은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하이테크법에 의한 개발 투자 우선이 되는 하이테크목록에 속한 하이테크 적용, 하이테크 인큐베이션, 하이테크 개발의 리스크 투자, 하이테크 인큐베이션 및 하이테크 기업 인큐베이션 사업을 위한 장소, 시설 등 건설 및 운영의 투자를 포함한다.

2. 환경·에너지 산업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특별 법인세 과세체계를 통해 해당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경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하에서 주요 국가의 관련 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특례 규정을 살펴본다.

가.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 법인세는 기본세율(Basic tax rate) 38%에서, 주소득에 따른 연방세액의 감액(Provincial abatement) 10%와 일반 세율 감액(General reduction) 13%를 차감함에 따라 순연방법인세율은 15%이다.³⁰⁾³¹⁾

최근 캐나다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적격 탄소 배출 제로 기술 제조 및 가공 활동(qualifying zero-emission technology manufacturing and processing)의 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50% 인하

27) 국내·외원천소득을 포함한다.

28) ‘손원식 외 3인, 2019, 『신흥국의 세정연구 : 베트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76~81’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9)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경우 우대세율 적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30) 소규모의 캐나다의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 CCPCs)의 소득이 CAD 500,000 초과할 경우 순연방법인세율 15%가 적용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9%가 적용된다.

31) 한국광물자원공사, 2021, 『캐나다 광물투자 실무가이드』.

된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적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순연 방법인세율 7.5%가 적용된다(소규모 CCPC의 경우 4.5%). 특례 세율은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어 2032년에 현행 연방법인세율 체계로 복귀될 예정이다.

법인세율 특례 규정은 총수입의 최소 10%가 적격 탄소 배출 제로 기술 제조 및 가공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다.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적격 활동은 태양광, 풍력, 수력 및 지열장비 등과 같은 에너지 전환 장비의 제조 또는 가공 활동, 배터리, 연료전지, 충전소와 같은 탄소 배출 제로 차량과 관련된 대부분의 제조 또는 가공 활동, 캐나다 내에서 물의 전기 분해에 의한 수소 생산과 기체, 액체, 고체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³²⁾ 다만, 표준 볼트 제조와 같이 모든 유형의 장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부품은 적격 활동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중국

중국은 2019년 4월 13일, 정부의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법인세 정책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오염 방지와 통제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반 표준법인세율(25%) 보다 낮은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살펴본 중국의 HNTSE와 ATSE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우대혜택과 동일하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적격 기업은 오염 산업 또는 정부로부터 환경 오염 제어 시설을 운영 또는 유지하도록 위탁받은 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³³⁾ 첫 번째로, 중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과거 3년 동안 세금 신용 등급이 C 또는 D로 평가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로, 고용 요건으로 현장에서 중간 직함을 가진 기술자를 5명 이상 고용하거나 고급 직함을 가진 기술자를 2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수입 요건으로, 환경보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연간 영업수입이 전체 수입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네 번째는 시설물 요건으로 해당 시설물을 1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법인 운영 범위 내에서 오염 물질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자체 실험실과 자원들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기준을 충족·처리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법인 스스로가 해당 세제혜택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후에 적격성 검증시 법인의 세무 부서는 해당 평가 수행을 위해 생태 환경 부서 책임을 이양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정부의 친환경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례 규정은 오염 방지 목적은 물론, 최근 신흥 산업으로 부상되는 친환경분야에서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32) 'Deloitte, Tax alert, 2022.2.23., <https://www.ey.com/en_gl/tax-alerts/canada-s-draft-legislation-includes-proposed-rate-reduction-for-zero-emission-technology-manufacturers>'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33) 'China Briefing, What Are the Tax Incentives in China to Encourage Technology Innovation?, 2023.3.29., <<https://www.china-briefing.com/news/china-pollution-control-tax-incentives/>>'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다. 베트남

앞서 살펴본 베트남의 투자촉진산업 세제혜택은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³⁴⁾ 적용대상 활동은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폐기물 처리로 된 에너지의 제조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환경오염의 처리 설비, 환경의 관측 및 분석 설비의 제조, 환경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폐수, 폐기,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활용이 이에 해당한다. 특례 내용은 앞 절에서 살펴본 투자촉진산업에 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하나, 저렴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10년간 16%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3. 석유, 가스, 광산업

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법인의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세전이익에서 세법에서 규정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산정한다. 법인세율은 22% 단일세율이다. 다만, 총 발행주식의 40% 이상을 공개하고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법인은 표준세율보다 3% 낮은 1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연 매출액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총매출액 중 48억 루피아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하며, 매출액인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5%로 최종분리과세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특정 업종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법인세 계산방법과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소득세법(Pajak Penghasilan, PPh)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Deemed profit margins, 인정이윤과세). 인정이윤과세가 적용되는 산업은 해운업, 항공업, 외국 석유·가스 시추업, 특정 상공부 대표 사무소이다. <표 4>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국내 해운업과 항공업의 경우 각각 매출액의 4%, 6%를 과세소득으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과거 인도네시아 법인세율 30%를 적용할 경우 유효법인세율은 각각 1.2%, 1.8%에 해당한다. 외국 석유·가스 시추업의 경우 국내 해운업과 항공업 보다 높은 인정이익률 15%를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34) 베트남의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는 해당 장의 소프트웨어산업의 베트남 관련 내용을 참고한다.

〈표 4〉 인도네시아의 특정 산업에 대한 인정과세 체계

산 업	매출액 대비 인정이익률	유효법인세율
국내 해운업	4%	1.2% ¹⁾
국내 항공업	6%	1.8% ¹⁾
외국 석유·가스 시추업	15%	3.3% ²⁾
특정 상공부(Ministry of Trade) 대표사무소	수출액의 1%	0.22% ²⁾

1) 재무부(Minister of Finance, MoF)에서 인정이익과세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유효법인세율은 과거 법인세율 30%에 인정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함

2) 유효법인세율은 현행 일반법인세율인 22%를 적용하여 계산됨. 다만, 지점이윤세(Branch Profit Tax)율은 조세협약에 따라 경감될 수 있음

자료 : PWC, 2022, 『인도네시아 포켓텍스북』, p.8.

나. 베트남

베트남은 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활동에 대해 일반 표준세율 20% 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한다.³⁵⁾ 구체적으로, 일부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각 사업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32~50%의 법인세율을, 특정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위치에 따라 40~5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4. 기타 업종

가. 인도네시아³⁶⁾

인도네시아는 법인의 특정 소득에 대해 이익이 아닌, 수입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시키는데 이를 인도네시아의 PPh4(2)에 따른 최종분리과세라고 일컬어진다. 최종분리과세대상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건설업이다. 그 취지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탈세 방지, 건설업의 과도한 원가 산정에 따른 조세회피 문제, 건설업체의 경우 사전공사 계약시 법인세비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최종분리과세대상의 원천징수세율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부동산임대소득이 10%로 가장 높고, 건설업은 건설시공으로 면허가 소규모 공사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일반 허가는 면허가 있으면 3%, 무면허이면 4% 이며, 설계 또는 감리는 면허가 있으면 4%, 무면허이면 6%를 적용

35) 주요 국가들은 석유, 광물 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의 별도의 특별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베트남은 법인세 과세단계에서 차등적인 법인세율을 부과한다. 이에 본 논문의 조사 범위에 포함하였다.

36) ‘김재훈, 2020,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pp.58~60’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받는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건설업의 사례를 토대로 인도네시아의 법인세 최종분리 과세의 의미를 살펴본다.

먼저,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인도네시아 내국법인으로 한 과세기간 동안 매출 200, 비용 100이 동일하게 발생하였고 이들은 각각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법인세는 세전이익(과세표준) 100에 법인세율 22%를 적용하여 법인세 22를 인도네시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³⁷⁾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B기업은 임차인이 임대인인 B에게 임대료 200을 지급할 때 200이 아닌 180을 지급한다. 즉 임차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임대료의 10%인 20을 원천징수세액으로 B 대신 납부하고 공제내역확인서를 임대인 B에게 전달한다. 즉 임대인 B기업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원천징수로(법인세 20) 종결한다(<표 5> 참고).³⁸⁾

<표 5> 인도네시아 최종분리과세대상 적용 예시

구분	A 기업 (제조업)	B 기업 (부동산 임대사업)
매출	200	200
비용	100	100
세전이익	100	100
세율	22%	10%
법인세	22	20
세후이익	78	80

주) A기업의 세무조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건설업의 경우 발주처 C가 일반건설 시공면허 B와 200억원에 건설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한다. 건설업체 B가 발주처 C에게 200억원 청구시 C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0억원의 3%인 6억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B 대신 납부하고 납부공제내역서를 B에게 제출하며 B가 지급받는 금액은 194억원이다. 따라서 B는 공사수익 200억원에 대한 법인세는 원천징수(법인세 6억원)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나. 베트남

앞서 살펴본 베트남의 투자촉진산업 세제혜택은 건설업, 제조업, 사회 영역, 농·임·어업 관

37) A기업의 법인세 세무조정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38) ‘조주희, 2012, 『사례로 들여다보는 인도네시아 법인세』, KOTRA,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16766>’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런 특정 활동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산업별 법인세 우대세율은 다음 <표 6>과 같다. 즉 건설 경자재, 석유 및 제조업 중 특정 산업 활동은 15년간 10%, 사회영역에 이바지하는 활동은 운영 기간 내내 10%, 고급강철 제조 및 특정 농·임·어업 관련 활동의 경우 10년간 17%의 우대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표 6> 베트남의 기타 산업 관련 활동에 대한 법인세 우대세율

활 동	법인세 우대세율
합성의 자재, 건설 경자재, 회자재의 제조	15년 간 10%
석유, 가축 및 구두, 전자 및 정보통신, 자동차 제조 및 조립, 제조기계와 같은 제품 제조를 위한 지원산업제품(정부 총리가 발행한 우선 지원산업 제품 목록에 속함)	
사회 영역 : 교육, 직업 양성, 의료, 문화, 스포츠, 환경, 사법	- 운영 기간 내내 10% - 어려운 지역 및 특별 어려운 지역 내 진행 시 4년 면세, 9년 50% 감면 - 타 지역에서 진행 시 4년 면세, 5년 50% 감면
고급강철 제조, 농어업의 제조를 위한 기계 및 장비의 제조, 가축, 가금, 수산 먹이의 가공 및 제조, 전통직업 개발의 활동으로의 소득	10년 간 17%

자료 : 손원식 외, 2019, 『신흥국의 세정연구: 베트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78~79 일부 발췌

다. 잠비아

잠비아는 소득원천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며, 표준법인세율은 30%이다. 다만, 장부를 기록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은 연간 365 콰차에 해당하는 기본 세금(base tax)이 부과되는데, 주로 소규모 상인에게 적용된다. 또한 잠비아는 특정 소득원천에 대해 표준법인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산업은 통신업으로 2023.1.1. 이후부터 3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³⁹⁾ 한편, 농업과 농산물가공은 표준법인세율의 3분의 1 수준인 10% 세율, 원석 가공은 표준법인세율 보다 5% 낮은 25% 세율이 적용된다.⁴⁰⁾

39) 잠비아의 통신업 영위 기업은 2023.1.1. 이전에는 과세소득 250,000 콰차까지는 30%의 세율, 250,000 콰차 초과 과세소득부터는 40% 세율이 적용되었다.

40) 호텔, 숙박, 음식 서비스업의 경우 COVID-19을 고려하여 2022.12.31.까지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었다.

IV. 주요 해외 사례의 시사점

<표 7>은 앞서 살펴본 주요 국가들의 특정 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특례의 주요 내용을 보여주며 이는 다음의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최근 지식기반경제의 성장과 친환경정책이 강조되는 경제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법인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 선진국인 유럽국가들은 일찍이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친환경산업의 발전이 늦은 중국과 베트남은 해당 산업의 세제지원 방식으로 세액공제·감면이 아닌, 낮은 세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의 특허박스제도, 중국과 베트남의 소프트웨어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우대세율은 평균적으로 각 국가의 표준법인세율의 50% 수준으로 낮다. 이는 법인세산출세액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 산업으로부터 발생한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나라도 지식기반산업과 친환경산업을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해 투자 또는 관련 비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되므로,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세제지원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논문은 단기적 측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제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적용대상, 공제율, 적용 기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 및 친환경 산업 기업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 세제혜택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23년 국회에서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⁴¹⁾ 구체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⁴²⁾ 로봇과 원자력, 인공지능⁴³⁾ 등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중 일부만이 통합투자·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어 있다.⁴⁴⁾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41) 2023.8.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바이오·화학물의약 중 신약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42)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992), 2023.5.15.

43)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547), 2023.6.9.

44)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은 7개 분야(세부분야 6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⁴⁵⁾ 아울러 현행 세제지원제도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인해 투자는 많이 했으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으나,⁴⁶⁾ 향후 폐업 또는 업종변경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를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다.⁴⁷⁾ 또한 정부는 2023년 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종전 대비 7~9% 상향하였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조기투자 유인을 위해 2023년 투자분에 한해 일반기술과 신성장사업 기술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년간 투자가 지속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⁴⁸⁾ 정부 또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연장 기한이 1년으로 한정적이다.⁴⁹⁾ 이 외에 현행 통합투자·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해당 산업의 장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⁵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세액공제방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수준은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세제혜택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특정산업에 대한 우대세율 적용은 국가 간 법인세 과세체계 차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우대세율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예외를 제외하고 단일세율이나, 우리나라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세제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로 세액공제·감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우대세율제도를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

른 국가전략기술은 12개 분야(세부분야 50개)이며, 기술명 또한 바이오의약품과 첨단바이오 등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다(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124871)」, 2023.11.).

45)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871), 2023.9.27.

46)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47)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393), 2023.5.31.

48)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547), 2023.6.9.

49) 기획재정부, 2024,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50) 구체적으로 제안한 일몰은 2년(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 2023.9.27.), 6년(양향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80), 2023.12.7., 김학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14), 2024.1.18.) 등이 있다.

기적 관점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쟁 국가들의 우대세율은 표준법인세율의 50%에 상응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액공제보다 세부담완화 효과가 큰 세액감면으로 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 산업에 대한 우대세율 적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이 해당 국가들과 같이 단일구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된 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주요 국가의 특정 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특례 규정 요약

산업	국가	표준 법인세율	특례 항목	특례 내용
소프트웨어	프랑스	25%	특허박스제도	적격지식 재산소득×10%
	영국	25%		특허 이윤×10%
	네덜란드	25.8%		특허 이윤×9%
	중국	25%	적격 하이테크기술(HNTE), 적격 기술 및 진보된 서비스(ATSE)	15%
			적격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5년간 면제, 이후 10%
	베트남	20%	하이테크, 소프트웨어 제품·제조 등	15년간 10%
환경·에너지	캐나다	15%	적격 탄소 배출 제로 기술 제조 및 가공 활동	세율 50% 인하(7.5%)
	중국	25%	오염 방지 및 통제	15%
	베트남	20%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폐기물 처리로 된 에너지의 제조, 환경보호 관련 사업	15년간 10%
석유, 가스, 광산업	인도네시아	22%	인정이윤과세	과세소득(매출액 4~15%)
	베트남	20%	석유, 천연가스, 특정 광물자원 탐사 등	석유, 천연가스(32~50%) 특정 광물자원의 탐사 등(40~50%)
기타	인도네시아	22%	최종분리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건설업)	부동산 임대소득(10%), 건설업(2~6%)
	베트남	20%	특정 산업	15년간 10%, 운영기간 내내 10%, 10년간 17%
	잠비아	30%	소득 원천별 과세	통신업(35%), 농업, 농산물 가공(10%), 원석 가공(25%)

주) 본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

둘째, 조사대상 국가 중 인도네시아는 특정 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탈세 방지, 건설업의 조세회피 우려와 기업의 사전공사 계약시 법인세 고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수입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여 법인세 과세를 종결하는 최종분리과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용 산정이 어려운 항공업 등의 법인세 과세소득은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인정이윤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종분리과세와 인정이윤과세제도는 각각 조세회피방지, 비용 산정의 어려움의 방안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세무행정절차가 간편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매출액에서 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비율, 원천징수세율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방지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법인이 일정한 토지 및 건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⁵¹⁾ 분양권⁵²⁾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 외에 추가적인 법인세를 과세한다.⁵³⁾ 또한 비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등 다양한 조세회피방지 규정들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 같이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수입금액에 기초한 법인세 과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체계와 기업의 발달된 회계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논문은 기업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특례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과 친환경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영국, 중국, 베트남 등은 표준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저율로 과세하는 특허박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친환경산업 발전이 미약한 중국과 베트남은 해당산업에 대해 세액공제·감면 방식이 아닌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우대세율은 평균적으로 표준법인세율의 2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특정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부동산임대산업과 건설업이 조세회피 유인을 억제하고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법인세 과세를 종결하는 최종분리과세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 등 비용 산정이 어려운 산업에 대

51)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52)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53)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서는 과세소득을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간주하는 인정이윤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본 논문이 조사한 국가들은 대부분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이나, 우리나라는 4단계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의 특정 산업에 대한 우대세율 적용을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 관점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용대상 확대, 공제율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 국가들의 특정 산업에 대한 우대세율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는 효과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세액감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우대세율 특례제도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이후에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산업의 다양성과 경쟁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인세 과세체계의 도입 여부를 해외 사례를 토대로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초과이윤세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법인세 과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조세 2023』.
- 기획재정부. 2024.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 김완석 · 황남석. 2023.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 김완중. 2019. 『세계 경제구조와 한국(생산구조 · 시장구조 · 경쟁구조)』. 시그마플러스 : 부산.
- 김재훈. 2020. 『2020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손원식 · 김선준 · 김일국. 2019. 『신흥국의 세정연구 : 베트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손원익. 2004. 『통세제도 도입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 04-05.
- 이준봉. 2013. 『주요국의 조세제도 : 캐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주희. 2012. 『사례로 들여다보는 인도네시아 법인세』. KOTRA.
- 통계청. 2022.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
- 통계청. 2024.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해설서』.
-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2022. 『인도네시아 포켓텍스북』.
- 한국광물자원공사. 2021. 『캐나다 광물투자 실무가이드』.
- 한국은행. 2014. 『특허박스(Patent Box)제도의 현황 및 국내 도입 방향』.
- Acadia. China ATSE Tax Incentives for Advanced Technology Service Enterprise.
(<https://acadiaadvisory.com/china-atses-tax-incentives-for-advanced-technology-service-enterprises/>)
- China Briefing. What Are the Tax Incentives in China to Encourage Technology Innovation?.
(<https://www.china-briefing.com/news/tax-incentives-china-to-encourage-technology-innovation-updated/>)
- Deloitte. Tax guides and Highlights. (<https://dits.deloitte.com/#TaxGuides>)
- PWC. Worldwide Tax Summaries. (<https://taxsummaries.pwc.com/>)

Special Corporate Tax System for Specific Industry :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Ye Ji Lee* · Ji Sun Chung**

〈Abstract〉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corporate tax system, we identify whether policymakers need to consider special corporate tax base and tax rate system for specific industries. Considering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already adopted tonnage tax system for the shipping industry, we exclude the shipping industry from the scope of our paper. We examine the special corporate tax system for specific industries in OECD and developing countries.

When it comes to tax rates, major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have introduced the patent box which applies low tax rates on income from intellectual property. In addition, China and Vietnam apply lower tax rates than the standard corporate tax rates for software and eco-friendly industries. Indonesian companies operating in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pay withholding taxes calculated by multiplying sales by a certain percentage. In Indonesia, for some industries where cost calculation is difficult(i.e., the aviation industry), a certain percentage of sales is deemed as the corporate tax base.

We have to consider the differences in the basic taxation system between our nation and other countries before introducing their tax systems in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ly, the special corporate tax systems in other countries give the Republic of Korea meaningful implications. Firstly,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oftware and eco-friendly industri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current tax credits which can be applied to related industries. Secondly, considering that the preferential tax rates for specific industries are generally half of the standard corporate tax rates in other countries, we suggest converting our tax incentive method from tax credit to tax reduction, for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and new growth engines and source technology. Lastly, countries adopting a single corporate tax rate have introduced the preferential tax rate system for specific industries. Therefor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is

* Ph.D.,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yeji0320@uos.ac.kr, First Author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stopline@uos.ac.kr,
Corresponding Author

tax system can be discussed after gradually reducing the number of corporate tax base sections, from four to on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conclusion, our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special corporate tax system to improv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specific industries.

〈Key words〉 Corporate tax, tax base, tax rate, industry